

한국감정원 명칭 변경 반영을 위한
「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
시행규칙」 등 6개 국토교통부령
일부개정령안

2020. 9.

국 토 교 통 부

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「한국감정원법」이 「한국부동산원법」으로 개정(법률 제17459호, 2020. 06. 09. 개정, 2020. 12. 10. 시행)됨에 따라 한국부동산원의 명칭 등 관련 규정을 일괄 개정하기 위하여 「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등 6개의 국토교통부령을 개정하려는 것임.

2. 참고사항

가. 관련법령 : 한국부동산원법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별도합의 필요 없음

라. 기 타 : 신·구조문 대비표, 별첨

**한국감정원 명칭 변경 반영을 위한
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6개
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령안**

제1조(「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의 개정)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「한국감정원법」에 따른 한국감정원(이하 “한국감정원”이라 한다)”을 “「한국부동산원법」에 따른 한국부동산원(이하 “한국부동산원”이라 한다)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, 제2호를 제3호로 한다.

2. 한국부동산원 소속 직원

제12조제4항 중 “한국감정원”을 “한국부동산원”으로 한다.

제2조(「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」의 개정)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제5항 중 “한국감정원(「한국감정원법」에 따른 한국감정원을 말한다.”을 “한국부동산원(「한국부동산원법」에 따른 한국부동산원을 말한다.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6항 본문 및 제12조제1항 중 “한국감정원”을 “한국부동산원”으로 한다.

제3조(「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」의 개정) 국토교통

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제15항제9호 중 “한국감정원”을 “한국부동산원”으로 한다.

제4조(「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」의 개정)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3. 「한국부동산원법」에 따른 한국부동산원(이하 “한국부동산원”이라 한다)

제8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한국부동산원

제5조(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」의 개정)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「한국감정원법」에 따른 한국감정원(이하 “한국감정원”이라 한다)”을 “「한국부동산원법」에 따른 한국부동산원(이하 “한국부동산원”이라 한다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한국감정원”을 각각 “한국부동산원”으로 한다.

제6조(「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의 개정)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제1항 중 “「한국감정원법」에 따른 한국감정원(이하 “감정원”이라 한다)”을 “「한국부동산원법」에 따른 한국부동산원(이하 “부동산원”이라 한다)”으로 한다.

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
“감정원”을 각각 “부동산원”으로 한다.

별지 제16호 서식 및 별지 제17호 서식 중 “한국감정원”을 각각 “한
국부동산원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.

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
일부개정령안 <제1조 관련> 신·구조문 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6조(감정평가 정보체계의 이용) ① 「 <u>한국감정원법</u> 」에 따른 한국감정원(이하 “ <u>한국감정원</u> ”이라 한다)은 감정평가 정보체계에 구축되어 있는 제4조 각 호의 정보 및 자료를 다음 각 호의 수요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. 1. (생략) 2. <u>한국감정원 소속 직원</u> 2. (생략) ② (생략)	제6조(감정평가 정보체계의 이용) ① 「 <u>한국부동산법</u> 」에 따른 한국부동산원(이하 “ <u>한국부동산원</u> ”이라 한다)----- ----- ----- -----. 1. (현행과 같음) 2. <u>한국부동산원 소속 직원</u> 3. (현행과 같음) ② (현행과 같음)
제12조(실무수습의 시행) ① ~ ③ (생략) ④ 제3항에 따른 현장실습근무지는 <u>한국감정원</u> , 협회 및 감정평가업자의 사무소로 한다. ⑤·⑥ (생략)	제12조(실무수습의 시행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 ④ ----- -- <u>한국부동산원</u> ----- -----. ⑤·⑥ (현행과 같음)

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

<제2조 관련> 신·구조문 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10조(공공택지 외의 택지의 감정평가 절차) ① ~ ④ (생략)	제10조(공공택지 외의 택지의 감정평가 절차) ① ~ ④ (현행과 같음)
⑤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은 <u>한국감정원</u> (「 <u>한국감정원법</u> 」에 따른 <u>한국감정원</u> 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에 제4항에 따라 제출된 감정평가가 법 제57조 및 이 규칙에 부합하게 이뤄졌는지 검토를 의뢰해야 한다.	⑤ ----- <u>한국부동산원</u> (「 <u>한국부동산원법</u> 」에 따른 <u>한국부동산원</u> 을 말한다.-----
⑥ 제5항에 따라 감정평가서의 검토를 의뢰받은 <u>한국감정원</u> 은 감정평가서를 검토한 결과를 검토 의뢰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.<단서 생략>	⑥ ----- <u>한국부동산원</u> ----- -----> . <단서 현행과 같음>
제12조(공공택지 외의 택지에 대한 재평가) ①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0조제5항에 따라 <u>한국감정원</u> 이 검토한 결과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제출된 감정평	제12조(공공택지 외의 택지에 대한 재평가) ① ----- ----- <u>한국부동산원</u> -----

가서가 관계 법령에 위반하여 평가되었거나 합리적 근거 없이 비교 대상이 되는 표준지공시지가와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등 부당하게 평가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감정평가기관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다시 평가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.	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
② ~ ⑤ (생략)	② ~ ⑤ (현행과 같음)

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<제3조 관련> 신·구조문 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8조(주택토지실) ① ~ ⑭ (생략)	제8조(주택토지실) ① ~ ⑭ (현행과 같음)
⑮ 부동산평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	⑮ ----- -----.
1. ~ 8. (생략)	1. ~ 8. (현행과 같음)
9. 한국감정원 및 한국감정평가사협회의 지도·감독	9. <u>한국부동산원</u> ----- -----
10. ~ 13. (생략)	10. ~ 13. (현행과 같음)
⑯ ~ ⑳ (생략)	⑯ ~ ㉔ (현행과 같음)

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<제4조 관련> 신·구조문 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7조(에너지 절약계획서 등) ① (생략)	제7조(에너지 절약계획서 등) ① (현행과 같음)
② 법 제14조제2항 후단에서 "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에너지 관련 전문기관"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(이하 "에너지 절약계획서 검토기관"이라 한다)을 말한다.	②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.
1.·2. (생략)	1.·2. (현행과 같음)
3. 「한국감정원법」에 따른 한국감정원(이하 "한국감정원"이라 한다)	3. 「 <u>한국부동산원법</u> 」에 따른 한국부동산원(이하 " <u>한국부동산원</u> "이라 한다)
4. (생략)	4. (현행과 같음)
③ ~ ⑧ (생략)	③ ~ ⑧ (현행과 같음)
제8조(건축물 에너지 평가서의 내용 및 공개기준 등) ①·② (생략)	제8조(건축물 에너지 평가서의 내용 및 공개기준 등) ①·② (현행과 같음)
③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에너지성능정보 공개·활용 운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	③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

시한다.	-----.
1. <u>한국감정원</u>	1. <u>한국부동산원</u>
2. · 3. (생략)	2. · 3. (현행과 같음)
④ (생략)	④ (현행과 같음)
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<제5조 관련> 신·구조문 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20조(정비사업전문관리업 정보 종합체계의 구축·운영) ① 「 <u>한국감정원법</u> 」에 따른 <u>한국감정원</u> (이하 “ <u>한국감정원</u> ”이라 한다)은 법 제108조제2항 및 영 제96조제2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게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정보 종합체계의 구축 및 활용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.	제20조(정비사업전문관리업 정보 종합체계의 구축·운영) ① 「 <u>한국부동산원법</u> 」에 따른 <u>한국부동산원</u> (이하 “ <u>한국부동산원</u> ”이라 한다)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1. ~ 7. (생략)	1. ~ 7. (현행과 같음)
② <u>한국감정원</u> 은 제1항 각 호의 정보를 매 분기가 끝난 날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정보종합체계에 입력하고, 추진위원회 또는 사업시행자 등이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정보종합체계를 상시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	② <u>한국부동산원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③ <u>한국감정원</u> 은 법 제108조제2항 및 영 제96조제2항에 따라	③ <u>한국부동산원</u> ----- -----

정비사업전문관리업 정보종합	-----
체계의 구축·운영을 위하여 다	-----
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	-----
있다.	----
1. ~ 3. (생략)	1. ~ 3. (현행과 같음)

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<제6조 관련> 신·구조문 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9조(증표 및 허가증) ① 법 제13조제4항(법 제15조제3항, 제16조제7항, 제18조제8항, 제20조제7항 및 제22조제9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에 따른 증표는 공무원증, 「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감정평가사 자격증 또는 「한국감정원법」에 따른 한국감정원(이하 "감정원"이라 한다)의 직원증으로 한다.	제9조(증표 및 허가증) ① -----
② (생략)	② (현행과 같음)
제11조(표준주택가격 조사·산정 보고서) ① (생략)	제11조(표준주택가격 조사·산정 보고서) ① (현행과 같음)
1. ~ 7. (생략)	1. ~ 7. (현행과 같음)
②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표준주택가격 조사·산정을 의뢰받은 <u>감정원</u> 은 영 제30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11호서식의 조사·산정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	② -----

	-- <u>부동산원</u> -----

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	-----.
1. ~ 5. (생략)	1. ~ 5. (현행과 같음)
제19조(공동주택가격 조사·산정 보고서) ① (생략)	제19조(공동주택가격 조사·산정 보고서) ① (현행과 같음)
1. ~ 3. (생략)	1. ~ 3. (현행과 같음)
② 법 제18조제6항에 따라 공동 주택가격 조사·산정을 의뢰받 은 <u>감정원</u> 은 영 제46조제1항에 따라 개별 공동주택가격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 사·산정보고서를 책자 또는 전 자정보의 형태로 국토교통부장 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	② ----- ----- -- <u>부동산원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1. ~ 6. (생략)	1. ~ 6. (현행과 같음)